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신아건설산업(최귀봉) ② 금광기업(주)(이동학)  
 ③ 극동건설(주)(문정동) ④ 남광토건(주)(김근영)  
 ⑤ (주)한양(김한기)

나. 전화번호 : ① 061-724-9588 ② 062-239-8115 ③ 02-2280-6200 ④ 02-3011-0290  
 ⑤ 02-721-8795

2. 명칭 : 천공기가 부착된 복합PBD장비를 이용한 연약지반 개량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해머, 브레이커의 타격수단, 이에 의하여 지반으로 관입되는 로드, 이의 선단에 부착되어 지반을 천공하는 원추형상의 치즐, 상기 로드를 압입하여 이의 관입성을 증대시키고 로드의 관입 후 이를 인발하는 와이어, 이를 감거나 푸는 드럼, 상기 와이어의 중간에 위치하는 롤러, 상기 와이어의 장력을 보장하는 실린더가 장착되어 지반을 사전 천공하는 천공기가 부착된 복합PBD장비를 이용하여 지중을 천공한 후 바로 PBD를 타설하여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법

<범위>

타격수단, 로드, 치즐, 와이어, 드럼, 롤러, 실린더가 장착된 천공기가 부착된 복합PBD장비를 이용하여 지반을 천공하고 PBD를 타설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7호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 신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택배 운송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10.15(목) 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요건을 충족한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로 2019년에 인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127호)된 자도 포함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0. 10. 15(목)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 및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또는 한국표준협회
  - 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문의) ☎ 044-201-4023
    - ☞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630호)
  - ② 한국표준협회(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 조사 용역팀)
    - ☞ 문의) ☎ 02-6240-4952
    - ☞ 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 DT센터 5층
5. 기타사항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공고란)를 참조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8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부동산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